

인천산단새일
2024년 인천산단새일 일자리한마당

2024년 인천산단새일 일자리한마당
Bio, Food, Beauty
취업드림페어

2024. 11. 1.(금) 13:00~16:00
여성의광장 야외주차장

참여기업 20개 참여기업 (식품 및 HACCP / 바이오 및 제약 / 화장품 제조 및 QC / 회계관련 분야 등)
부대행사 이력서사진촬영, 마음건강상담, 창업지원세미나 등
연계진행 여성의광장 수강생 한마당(베이커리 판매, 공연 및 전시회)
문의 032)440-8992/8967

※ 구인업체 현황은 인천여성의광장 홈페이지(www.incheon.go.kr/wp) 공지사항에서 10, 21.(월) 확인 가능
※ 채용행사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이력서, 신분증 지참 필요

주최/주관 | 인천산단새일지원센터 | 후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여성가족부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4년 CEO 만남의날

행사일시: 24.11.11.(월) 16:30~19:30
행사장소: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2층 에메랄드홀

내용

- 2024년 직업계고 채용현황 안내 및 의견수렴
- 기업에서 희망하는 인재상 등
- 직업계고 학생 채용 우수기업 CEO 감사패 증정
- 교육감 추후 행사 참여기업 대상 우수기업 방문 협조 요청
- 직업계고 홍보 동영상 상영, 인천 직업계고 및 학교 소개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채무조정

[24.6.21.부터 통신채무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방문 상담
전국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창구에서 1:1 맞춤상담 지원
* 상담시간: 평일 9:00~17: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 필요서류: 신분증
* 상담비용: 무료(개인채무조정 신청비용 5만원)

인터넷 상담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oocrs.or.kr)를 통해 상담 및 개인채무조정 신청
* 상담방법: 사이버상담부 상담 신청 → 담당 심사역과 전화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개인채무조정 신청
* 상담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상담 신청 → 담당 심사역과 전화상담

전화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 상담시간: 평일 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유의사항

- 통신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통신사의 모든 서비스(정상이용 회선 포함)가 이용정지될 수 있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직권해지*됩니다.
* 직권해지란? 보유한 회선이 해지되어 휴대전화 번호가 삭제되는 것(원복 불가)
- 조정 희망하는 통신사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통신사의 일부 회선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금융채무의 연체일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신속·사전·채무조정)가 결정되며, 통신채무의 연체일수와는 무관합니다.

2024 11 통권 4호

인천잡담+
job잡담 이야기

*「인천잡담+」 인천(지역, 우리 관내) 잡(job)담(談:이야기, 담다) 플러스(알쓸신잡의 업그레이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격주로 발행되었던 「알쓸신잡」 구인정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화요일 업로드됩니다.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문의는? 032)460-2723, 4733

행사일정 문의는? 032)460-4717, 4766

프로그램 및 행사 일정

월	화	수	목	금
				1
				<p>단 구직스트레스 다루기 별관 2층 취업특강실 9:30~12:30</p> <p>행 2024년 인천산단새일 일자리한마당 여성의광장 야외주차장 13:00~16:00</p>
4	5	6	7	8
<p>취 평생월급 프로젝트 고용센터 6층 교육장 15:00~17:00</p> <p>집 신호탄 프로그램(신중년 재취업)(~11.6) 별관 2층 희망실 9:30~16:30 총 18시간 3일간</p>	<p>단 신중년 건강관리 별관 2층 취업특강실 9:30~12:30</p> <p>집 청년취업GYM(~11.6) 고용센터 4층 9:30~16:30 총 12시간 2일간</p>	<p>취 부채해결방법 고용센터 6층 교육장 15:00~17:00</p> <p>단 중장년 경력관리 별관 2층 취업특강실 9:30~12:30</p> <p>행 일자리 수요데이 '취업네트' 인천고용센터 지하 2층 채용행사장 14:00~16:00</p>	<p>단 [50-60대] 고용24를 통한 일자리 탐색 별관 2층 취업희망실 9:30~12:30</p> <p>집 내일또다시(4060세대)(~11.8) 고용센터 4층 9:30~16:30 총 12시간 2일간</p>	<p>취 전기자동차의 변화 고용센터 6층 교육장 15:00~17:00</p> <p>행 미추홀구 채용박람회 미추홀구청 대회의실 13:30~16:30</p>
11	12	13	14	15
<p>취 중장년 취업특강 고용센터 6층 교육장 15:00~17:00</p> <p>집 청년취업지도 (CAP@) 프로그램(~11.14) 별관 2층 CAP@실 9:30~16:30 총 24시간 4일간</p>	<p>집 마음톡톡 프로그램 (~11.14) 비대면 10:00~15:00 총 12시간 3일간</p>	<p>단 (청년층)생산기술 및 품질관리 직무 이야기 별관 2층 취업특강실 13:30~16:30</p> <p>단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별관 2층 취업특강실 9:30~12:30</p>	<p>취 합리적인 신용관리 고용센터 6층 교육장 15:00~17:00</p> <p>행 공항일자리 채용의 날 인천공항 제1터미널 10:00~16:00</p>	<p>취 뿌리산업과 초정밀 가공의 미래 고용센터 6층 교육장 15:00~17:00</p>
18	19	20	21	22
<p>집 신호탄 프로그램(신중년 재취업)(~11.20) 별관 2층 희망실 9:30~16:30 총 18시간 3일간</p>	<p>취 구직스트레스 및 우울증 이해하고 극복하기 고용센터 6층 교육장 15:00~17:00</p> <p>집 성취 프로그램(~11.22) 고용센터 4층 집단상담실 9:30~16:30 총 24시간 4일간</p>	<p>단 마음의 힘 기르기_공동 별관 2층 취업특강실 9:30~12:30</p> <p>행 일자리 수요데이 '취업네트' 인천고용센터 지하 2층 채용행사장 14:00~16:00</p>	<p>단 [50-60대] 고용24를 통한 일자리 탐색 별관 2층 취업희망실 9:30~12:30</p>	<p>취 금속재료의 이해와 직무 고용센터 6층 교육장 15:00~17:00</p>
25	26	27	28	29
<p>취 알기쉬운 근로기준법 고용센터 6층 교육장 15:00~17:00</p> <p>집 청년취업지도 (CAP@) 프로그램(~11.28) 별관 2층 CAP@실 9:30~16:30 총 24시간 4일간</p>	<p>행 인천 일자리 한마당 인천시청 중앙홀 14:00~17:00</p>	<p>단 (청년층) 보건·의료 분야 채용트렌드 별관 2층 취업특강실 13:30~16:30</p> <p>단 잘 살아온 내 인생, 앞으로는?_중장년 별관 2층 취업특강실 9:30~12:30</p>		<p>취 산업혁신을 지탱하는 기초기술(용접) 고용센터 6층 교육장 15:00~17:00</p>

취 취업특강(2시간) **단**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3시간) **집** 집단상담프로그램 **행** 행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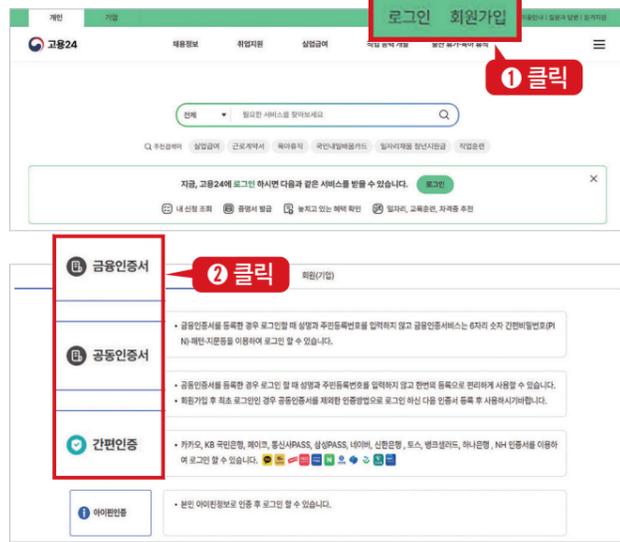


고용24 구직신청 안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24** 를 검색하거나 **www.work24.go.kr** 로 접속하여 주세요.

1 고용24 개인회원 로그인

- 화면 상단에서 **로그인** 클릭 → **인증서(공통/금융/간편인증)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은 직업훈련 출석 확인 등을 위한 모바일 로그인 서비스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고용24를 처음 사용하시는 구직자는 화면 상단에서 **회원가입** 클릭 → **개인회원 가입** 에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2 구직신청 및 이력서 등록

- 화면 상단에서 **채용정보** 클릭 → **구직신청** 메뉴로 이동
- **나의 구직신청정보** 에서 **고용24 구직신청하기 신청정보** 클릭하여 이력서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완료



3 모바일 고용24 이용안내

어플설치하기

- 안드로이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24]를 검색 후 다운로드
-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고용24]를 검색 후 다운로드

모바일 웹(m.work24.go.kr)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Q&A | 주휴수당

Q 유급휴일(주휴일)은 무엇인가요?

A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Tip! 유급휴일제도는 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Q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Tip!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일하면 총 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휴수당은 1일의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Tip! 주휴수당은 일한 시간당 임금(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을 계산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 1일 8시간 일하고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으면, 주휴수당은 8만원(=8시간×10,000원)이 됩니다. 이는 주 5일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추가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Q 계약기간 1주일(7일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주간(7일간) 일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Tip!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는 하루치 추가임금(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음 주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일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4-1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꼭 알아야 할 4가지

- **최저임금액:** '24년 기준 :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2,060,740원)
* '23년 기준 : 시간급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산입범위:** 매월 지급되는 임금
'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
-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액적용:**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적용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구분	산입여부
매월 지급	미산입
소정근로 의의 임금	미산입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월 환산액의 25%초과분 산입('19년 기준) 20%초과분 산입('20년 기준) 15%초과분 산입('21년 기준) 10%초과분 산입('22년 기준) 5%초과분 산입('23년 기준) 전액 산입('24년~)

구분	산입여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미산입
매월 지급	생활보조, 복리후생성 임금	월 환산액의 7%초과분 산입('19년 기준) 5%초과분 산입('20년 기준) 3%초과분 산입('21년 기준) 2%초과분 산입('22년 기준) 1%초과분 산입('23년 기준) 전액 산입('24년~)
	통화로 지급	월 환산액의 7%초과분 산입('19년 기준) 5%초과분 산입('20년 기준) 3%초과분 산입('21년 기준) 2%초과분 산입('22년 기준) 1%초과분 산입('23년 기준) 전액 산입('24년~)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산입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	미산입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 현황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
2024	9,860	78,880	2,060,740
2023	9,620	76,960	2,010,580
2022	9,160	73,280	1,914,440
2021	8,720	69,760	1,822,480
2020	8,590	68,720	1,795,310
2019	8,350	66,800	1,745,150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아래의 임금
·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 유급휴일·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③ '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복리후생비	7%	5%	3%	2%	1%